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5. 9 선고 2021가합11256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관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변 론 종 결 2023. 4. 4.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피고의 이모이고, C와 피고는 친형제 간이다.

나. 원고는 2002.경부터 수 년 간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D이 C 또는 C의 처 E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카인 C에게 수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

다. 이후 원고와 C은 2008.경 그 간의 대여관계를 정산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액수를 3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C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고, 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용 증

채무금액 삼 억 원 300,000,000

원금변제기일 년 월 일

상기 채무금액을 2008년 월 일로 차용하였기에 이에 영수함

2008년 월 일

채권자 A(원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B(피고)

※ 별도 작성사항

3. 인감증명(각 1. 연대보증용)

마.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성명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여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으며, 원고에게는

C에게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연대보증계약 체결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진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성명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인영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의 인영을 날인한 것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증거능력이 없다.

4) 이 사건 차용증 외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C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어 C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가 C에게 회생채권 신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피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일응 C은 회생채권 신고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C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그 외에 피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달리 피고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주채무자가 면책될 것이 예상되는 개인회생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도 C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의 연대보증의사 및 C에 대한 대리권 수여 여부를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이모로서 언제라도 쉽게 피고에게 이러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정현지, 판사 이지영